

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 
일부개정조례(안) 검토 보고서

2009. 4. 24.

광진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 
전문위원

#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 검토보고

의안 번호	744
----------	-----

2009. 4. 24.  
의회 운영위원회

1. 제안자 : 박채문 의원 외 3인

## 2. 개정이유

사직 등 의원의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 맞게 상임위원회 설치와 정수 규정을 정비하고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하여 의정활동의 능률화를 기하고자 함.

## 3. 주요골자

○ 제2조 → 단서규정 신설

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정수는 다음과 같다.

다만, 원구성후 위원의 사임, 의원신분의 상실 등으로 결원이 발생된 위원회는 충원이 있기까지는 결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수를 그 위원회의 정수로 한다.

- ① 의회운영위원회 7명
- ② 기획행정위원회 6명
- ③ 복지건설위원회 7명

○ 제7조제③항의

의회는 의원의 “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징계자격특별위원회”를 둔다를 “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”를 둔다로 변경

#### 4. 전문위원 검토의견

○ 이번에 개정하는 조례안은 의회 상임위원회의 설치와 정수 규정을 정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,

##### 주요개정 내용은

○ 제 1조의 내용중 지방자치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“지방자치법 제62조에 따라 로

○ 제 2조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정수는 다음과 같다. “다만, 원구성후 위원의 사임, 의원신분의 상실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위원회는 충원이 있기까지는 결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수를 그 위원회의 정수로 한다” 라는 단서규정을 신설하였고

○ 제 7조 3항 내용 중 의회는 의원의 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둔다를 의회는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로 변경하는 사항임

본 조례안은 의회상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의정활동의 능률화를 기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 및 관계규정에 부합하므로 개정함이 타당함.

## 5. 참고사항

- 가. 관련법령 : 지방자치법 제56조(위원회의 설치),  
제62조(위원회에 관한 조례)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기타사항 : 없음

#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744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09. 4. 9 .

제 출 자 : 박채문 의원 외 3인

## 1. 개정이유

사직 등 의원의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 맞게 상임위원회 설치와 정수 규정을 정비하고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하여 의정 활동의 능률화를 기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○ 제2조 → 단서규정 신설

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정수는 다음과 같다.

다만, 원구성후 위원의 사임, 의원신분의 상실 등으로 결원이 발생된 위원회는 총원이 있기 까지는 결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수를 그 위원회의 정수로 한다.

① 의회운영위원회 7명

② 기획행정위원회 6명

③ 복지건설위원회 7명

○ 제7조제③항의

의회는 의원의 “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징계자격특별위원회”를 둔다를 “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”를 둔다로 변경

### **3. 참고사항**

가. 관련법령 : 지방자치법 제56조(위원회의 설치),  
제62조(위원회에 관한 조례)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기타사항 : 없음

##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.

“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 
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62조에 따라“로 한다.

제2조(상임위원회 설치와 정수)를 다음과 같이 단서규정을 신설한다.

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정수는 다음과 같다.

다만, 원구성후 위원의 사임, 의원신분의 상실 등으로 결원이 발생된 위원회는 총원이 있기까지는 결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수를 그 위원회의 정수로 한다.

1. 의회운영위원회 7명
2. 기획행정위원회 6명
3. 복지건설위원회 7명

제6조(상임위원장)제①항의 “부위원장 1인”을 “부위원장 1명”으로 한다.

제7조제③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.

의회는 의원의 “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

하여 징계자격특별위원회”를 둔다를 “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”를 둔다로 한다.

제8조(특별위원회의 위원장)제①항의 “위원장 1인”을 “위원장 1명”으로 한다.

제11조(부위원장)제①항의 “부위원장 1인”을 “부위원장 1명”으로 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《신 · 구 조문 대비표》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-----.	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62조에 따라 -----.
제2조(상임위원회 설치와 정수)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정수는 다음과 같다.<단서규정 신설>	제2조(상임위원회 설치와 정수)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정수는 다음과 같다. 다만, 원구성 후 위원의 사임, 의원신분의 상실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위원회는 충원이 있기까지는 결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수를 그 위원회의 정수로 한다.
1. 의회운영위원회 7명 2. 기획행정위원회 6명 3. 복지건설위원회 7명	1.~3. (현행과 같음)
제6조(상임위원장)① --- 1인 을 -----.	제6조(상임위원장)① --- 1명 을 -----.
②~④ (생략)	②~④ (현행과 같음)
제7조(특별위원회)	제7조(특별위원회)
①~② (생략)	①~② (현행과 같음)
③의회는 의원의 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둔다.	③의회는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.
④ (생략)	④ (현행과 같음)
제8조(특별위원회 위원장)① ----1인을-----.	제8조(특별위원회 위원장)① ----1명을-----.
②~③ (생략)	②~③ (현행과 같음)
제11조(부위원장)①-----1인 을-----.	제11조(부위원장)①-----1명 을-----.
②~③ (생략)	②~③ (현행과 같음)